



제 1019 호

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례 제10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3
○ 조례 제10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6
○ 조례 제107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9
○ 조례 제107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6
○ 조례 제107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9
○ 조례 제10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 28
○ 조례 제10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35
○ 조례 제10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 49
규 칙	
○ 규칙 79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52
훈 령	
○ 훈령 2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개정 규정 54

회 람								
----------------	--	--	--	--	--	--	--	--

공 고

○ 공고 제2011- 1582호	물수된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예고 공고		57
○ 공고 제2011- 1585호	2012년 제1차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58
○ 공고 제2011- 1586호	소액수익(2012년도 저소득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단가계약)견적제출 안내 공고		60
○ 공고 제2011- 15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공고		64
○ 공고 제2011- 15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도림지구 소3-1, 소3-2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69
○ 공고 제2011- 159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안) 입법예고 공고		70
○ 공고 제2011- 1600호	2012년도 남동마당 제작 발간 입찰 공고(긴급)		82
○ 공고 제2011- 21호	장수서창동 제5통장 추가 모집 공고		86

고 시

○ 고시 제2011- 117호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90
○ 고시 제2011- 118호	도시계획시설[공원,공공공지(상인천초고주변 주택재개 발 정비사업)]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고시		92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07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며, 제5조제1항 및 제7조의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하고, 제6조제1항의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서식란 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 제2항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지급액(1인기준)	1,932,500원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의거 인상분을 반영하고, 국내여비 중 “일비” 를 “현지교통비” 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내용

- 2012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통보에 따른 인상분 반영
(제3조제2항 별표2)
- 국내여비 중 “일비” 를 “현지교통비” 로 변경
(제5조 및 제7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07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 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고문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하고,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각종 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2인”을 “3명”으로 하고,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구”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법률적 분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수를 조정하고, 임기만료 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사건 종결 시까지 수행하도록 하여 소송비용 등의 추가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의 정수 조정 : “2명 ⇒ 3명 ” (제2조)
-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쌍방대리 금지 (제3조제3항)
-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해야 하는 조항 신설 (제4조제2항)
- 품의손상 등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의 해촉사유를 명백히 하는 조항을 신설 (제4조의2)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07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

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나. 추계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다. 재원조달 방안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하며,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표시)

4. 부대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작성자 :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작성자 : △△국 △△ 과장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7.14 공포, 2011.10.15 시행)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 제출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3조)
- 비용추계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4조 및 제5조)
-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 작성 및 제출시기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6조 및 제7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07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

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남동구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 확대 및 수당 규정 개정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윤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에 관한 사항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에 관한 사항 추가 (제3조제1항제3호)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함 (제3조의2)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준용 규정 반영 (제9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07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천광역시 남동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

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과 구가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 구민(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5조(사실조사) 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 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

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보상금 등) ①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 부서장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담당 부서 소속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의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4조(환수) 구청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직자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전화번호	
피 신고인 (부조리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신 고 내 용				
증 빙 서 류				
비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별표 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제12조 관련)

1. 유형별 지급기준

구분	유 형(지급대상)	지 급 기 준
1	조례 제2조제3호가목 관련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	조례 제2조제3호나목 관련	· 추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단,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 이내 추가지급 · 추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 이내 단, 사후 추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 이내 추가지급
3	조례 제2조제3호다목 관련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2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200 만원

2. 지급액의 상한액 기준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기준 상한액은 10백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별표 3]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장

연 번	접 수 일 자	신 고 자 주소·성명	부조리 행위 공무원 인 적 사 항			비 위 내 용	증거자료명	사실조사 결 과	보 상 금 심의결과		보 상 금 지급일자	비고
			소 속	직 급	성 명				가·부	지급액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장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장 및 보상금 지급 등 목적을 규정함 (제1조)
- 부조리 행위 신고를 인터넷,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함 (제3조)
-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협조자의 보호 등을 규정함 (제6조부터 제10조)
-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현금지급이 가능 하도록 하고, 지급심사·결정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함 (제12조)
- 신고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범위를 규정함 (제13조)
- 신고자 및 협조자의 피해 발생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5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08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
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
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
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
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
족 지원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
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
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 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다문화가족관련 주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상 조례」

에 따른다.

제15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이유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 재정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 (3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시행계획수립 추진(제4조 및 5조)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협의회 설치, 협의회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 규정 (제6조부터 제9조)
-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 업무추진 (제3조)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제15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08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가정사업계 폐기물”이란 가내수공업 등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소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이사, 집수리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중 일반용 봉투에 담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적환장”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공중용 쓰레기통 또는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생활폐기물 등을 능률적으로 수집·운반 및 이적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의 능률적인 수행 및 주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

위

3.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폐기물을 성상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중간처리를 필요로 하는 대형폐기물 또는 별도처리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의 허가를 얻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예상 발생량과 반입수수료의 인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매립지 또는 소각장 등(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납부할 반입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입수수료는 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따로 정한 반입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과 같이 다수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매립지 반입가능품, 별도처리품, 재활용가능품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재활용품의 분리·수집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설치자에게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수집·운반이 쉽도록 제작하여야 함.
2. 음식물류 등의 부패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쥐,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및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함.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제13조에 따른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가정사업계폐기물은 제13조에 따른 해당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
3.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이하 “인터넷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부착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4.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5.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② 구청장은 각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품목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에 관하여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로 하여금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부담) ①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배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출자는 수수료가 포함된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또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대형폐기물의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한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산지불 하는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한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재정자립도의 목표를 정하여야 하며, 정해진 목표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 대행구역, 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사용되는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공한지 및 위락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6. 수집·운반·처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7. 대행료 지급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9. 대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10.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대행계약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의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로 한다.
3. 대행계약 방법은 도급방식으로 하며, 대행계약 기준은 실제 수집·운반·처리한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자가 실제 보유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이의 확보계획, 기술력 향상계획, 경영합리화노력, 비용의 절감계획, 성실도, 청소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 및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로 구분하며, 그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 봉투는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2.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매입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3.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4.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골목 등 공공장소에서 청소할 경우에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다량배출 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으로 사용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생분괴성 폴리에스테르로 하고, 색상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청색,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별도의 지방서에 의하며, 가정사업계 처리용 봉투는 적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녹색으로 제작한다. 다만, 일반용 봉투 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전면에는 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표기하고,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의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쓰레기봉투의 제작 재질별 단체표

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검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광고주를 모집하여 상업광고 등을 게재한 후 제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규격·용도 및 가격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부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등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기업(이하 “도시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⑤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3. 지정서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정서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휴업·폐업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도시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6. 규격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
7.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8.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2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구청장은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구청장이 규정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였을 때
3. 모조 또는 불법유출 된 봉투를 진열하거나 판매하였을 때

4.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된 판매인의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제25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② 수납되는 과태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의견제출)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을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27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와 제2항의 과태료독촉 납부통지서는 인천광역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OCR 용지로 발부한다.

제2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준용규정) 반입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3조(권한위임) 제23조에 따른 수수료감면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규격봉투의 지급,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종량제봉투 관리 및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청결조치명령 미이행자 행정대집행 규정 신설(제5조제3항)
-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행실적 평가 반영 (제12조제3항)
-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유통방지, 종류, 제작,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
- 종량제봉투 판매소 과태료 규정 신설 (제21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12월 30일

남동구 조례 제108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치된 정기예금의 예치금액은 만기 도래시 순차적으로 회수하고, 이차보전용 공공예금 잔액은 2012년 2월 16일까지 회수하여 일반회계로 편입한다.

② 이차보전금은 2011년 12월분까지는 예치된 정기예금에서 지급하고, 2012년 1월분부터는 기존에 융자된 기금이 상환만료 될 때까지 일반예산

에 편성하여 지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를 삭제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이유

- 지방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목적달성 및 사업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미약한 동 기금을 폐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 기금폐지시 기금재원 처리방법을 부칙에 정함
 - 예치된 정기예금의 예치금액은 만기 도래시 순차적으로 회수, 이차보전용 공공예금 잔액은 2012년 2월 16일까지 회수하여 일반회계로 편입
 - 이차보전금은 2011년 12월분까지 예치된 공공예금에서 지급 2012년 1월분부터는 기존에 융자된 기금이 상환만료 될 때까지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지급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12월 30일

남동구 규칙 제79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의안발의시 비용추계서에 관하여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10.15 시행)됨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토록 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비용추계서 첨부(제19조 제3항)
 - 예산상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함.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 일부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1년 12월 30일

남동구 훈령 제27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복지비”를 “복지점수”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으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만”을 “미만(복지점수의 연도 내 배정과 관계없이 임용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부모·자녀 1인당(4인 이내) 5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를 “부모 각 50포인트, 첫째 자녀 50포인트, 둘째 자녀 100

포인트 및 셋째 자녀 이상 200포인트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발생하는 근속기간 및 가족상황의 변동사항은 해당연도 포인트에 반영되지 아니한다.”를 “복지점수 배정의 기초가 된 요건 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는다.”로 한다.

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균근무시간을 적용하여 포인트를 배정한다.

가.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 : 배정기준에 의한 포인트 X 주당 평균근무시간/40시간

나. 가족포인트 :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제10조의 제목 중 “일할정산”을 “월할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전출·해외파견·휴직·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제한 또는 소멸된 경우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며, 신규채용·전입·복직으로 인하여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변동일 익월부터 월할 계산한다. 다만, 질병·육아·가사휴직(6개월 미만)은 제8조제1항 적용기간에 한해 정산하지 아니하며, 보험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전입일,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선택적 복지제도의 가족포인트의 배정기준을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제3조)
- 복지제도 적용대상자의 배열 정비 (제7조)
- 6월 미만 휴직자에 대한 기준의 명확화 (제8조)
- 가족포인트 배정기준 변경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포인트 차등 지급 신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 임용 종류에 상관없이 월할계산 적용 (제10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1582호

몰수된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1. 12. 27. ~ 2012. 01. 15.

2. 대상 자동차

차량번호	소유자	차명	사용본거지	송달지	직권말소 예정일
86머1639	(주)삼원종합건설팅	이스타나-쏘6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호	2012. 01. 15. 이후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등록팀 (☎453-2935)

2011. 12. 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1585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2012년 제1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27.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와 명칭 :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 및 열람기간 : 2011. 12. 27. ~ 2012. 1. 10 (15일간)
4. 열람내용 : “붙임”과 같음
5.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남동구청 건설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토지)

사업명 :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금 액(원)			소유자 성 명 (지분율)	비 고
	동명	지번	지목		면적(㎡)		감정평가업자		사업자 제시액		
			공부	실제	공부	편입	대화감정	통일감정			
1	도림동	산16-7	임	도	8	8	1,085,870	1,143,680	1,114,780	김영분 (52/331)	
	계				8	8			1,114,78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158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변경공고

1. 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2012년도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신문보급 단가 계약 (연간)
 나. 품명 및 규격 수량

품 명	규격	수량(1회)	비 고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4절 12면이상	1,517부	월2회 제작·보급

- 다. 기초금액 : 1,000원
 라. 입찰방법 : 견적입찰, 단가입찰
 마. 예 산 액 : 36,400,000원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예산범위내)
 사. 납품방법 : 위탁계약서(안) 참조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11. 12. 28(수)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12. 01. 0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2. 01. 02(월)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PC

3. 견적입찰 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등록되어 있으며,
 나. 신문내용이 인천시 장애인 재활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매체의 온-오프라인의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인쇄물 음성출력 기능을 구비하여 장애인을 위한 간행물을 제작하고 있는 신문사이어야 합니다.
 다. 발행신문의 기사내용이 타 신문사의 기사를 과도하게 옮겨 게재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장애인들에게 꼭 알아야 할 복지시책과 재활에 필요한 제반정보가 주된 기사가 되어야 하며 신문구독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4대보험에 가입한 전담취재기자 3인 이상을 확보한 신문사이어야 합니다.

- 라. 최근 2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소식지 발행 실적이 있으며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주된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신문사이어야 합니다.

4. 입찰방식

- 가. 본 견적은 단가입찰이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복수예가)의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중에서 납본필증, 온-오프라인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음성출력 기능, 전담 취재기자 3인 이상의 4대보험 가입 확인서(납입 영수증 등), 인천광역시 소재 장애인 생활편익정보제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7.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전자계약 체결

- 가.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10. 기타사항

-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

약특수조건, 기타입찰조서,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http://www.g2b.go.kr>)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032-453-2524 허민희)로 문의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여하시고, 입찰에 관한 문의는 재무과(032-453-2266 최현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159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조례 인용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세 세율에 관한 인용 조항 변경(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전화 : 032-453-2363, FAX : 032-453-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1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조례 인용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산세 세율에 관한 인용 조항 변경(안 제10조)
 - 「지방세법」 제13조제3항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제1호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
 -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제5호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5호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세법」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가목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제13조제 3항제1호”를 “제13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13조제3항제5호”를 “제13조제5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세율)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세율)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2. ---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 제13조제5항----- ----- -----
나·다 (생략)	나·다 (현행과 같음)
3. 주택	3. --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 제13조제5항제1호-----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4. 선박	4. --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가. - 제13조제5항제5호----- -----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실 · 단 · 과 · 소 · 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15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림2지구 소3-1, 소3-2호선] 사업 공사 완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0-77호(2010.12.24.)로 실시계획(변경)고시 하여 시행 완료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 도림2지구 소3-1호선, 소3-2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공고 합니다.

2011. 12. 3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동구 도림동 437-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도림2지구 소3-1호선,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노선 번호	규 모
도 로	소로 3-1호선	폭원(B)=6m, 연장(L)= 48m
도 로	소로 3-2호선	폭원(B)=6m, 연장(L)=399m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 우)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5. 사업기간 : 2010. 3. 4. ~ 2011. 6.10. 끝.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 1596호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사전 공표 대상 정보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현재 규정되어 있는 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 공표주기에 따라 조문 내용을 구분한 입법 취지에 맞도록 재정비
-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정보공개 부서 확대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행정기구 직제개편에 따른 정보공개 사무 담당부서 확대(안 제4조제2항)
- 행정정보의 공표 항목 중 일상적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개 항목 추가 (안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
- 행정정보 공표 목록 항목 수정 (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8호)
- 남동구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1008(소래로 633) 민원봉사과장
(우편번호 : 405-750)

○ 연락처 : 전화) 032-453-2434, FAX) 032-453-5691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 정보 공개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226호)에 따라 정보공개에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 남동구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행정정보공개 운영 전문성 제고를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직제개편에 따른 정보공개 사무 담당부서 확대(안 제4조제2항)
- 행정정보의 공표 항목 중 일상적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4개 항목 추가 (안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
- 행정정보 공표 목록 항목 수정 (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8호)
- 남동구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및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사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의2)

☐ 본 문 : “별첨”

☐ 관련법령 발체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1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과, 보건소, 출장소, 동”을 “실·단·과,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및 동”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주요사업의 자체평가 결과”를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8.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9. 각종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내역 및 잔액

10.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을 둔다.

② 남동구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정보의 공표방법(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공 표 방 법			
정보공개법 제7조	공개범위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 당해연도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업무계획(전부)	기획예산실	연1회	2월 중	인터넷 또는 인쇄물
	예산편성현황	기획예산실	연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기금운용계획 및 현황	기획예산실	연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결산(전부)	재무과	연1회	결산승인일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2.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목 록, 지출금액 사용일시	총무과	월1회	10일 이내	인터넷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측정 결과	전 부	재난방재과 환경보건과	월1회	검사결과후 즉시	인터넷
4. 구정 주요통계조사 결과	통계연보	기획예산실	연1회	통계조사집계 완료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인구통계	총무과	월1회		
	구정현황	총무과	수시		
5.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기획예산실	연1회	2월중	인터넷 또는 인쇄물
6. 중장기 종합계획	중장기종합계획서	기획예산실	연1회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부정불량식품 및 회수공고	식품위생과	수시	공고 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예산 및 진액	식품위생과	월1회	매월말 또는 초	인터넷 게재
8.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보육시설 현황	아동청소년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복지시설 현황	주민 생활지원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노인복지시설 현황	노인장애인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9.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사용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수수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공공요금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10.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결과물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구 분		공 표 방 법			
정보공개법 제7조	공개범위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1. 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안전 점검 및 진단결과보고서	진단결과 보고서	건설과	수시	진단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12.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건설과	수시	예산편성후 1개월 이내 집행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13.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재난방재과	수시	예산편성후 1개월 이내 집행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14.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	공사및 물품 발주계획 목록	해당부서	수시	15일 이내	인터넷 게재
15. 수의계약 내역(50만원이상 물품구매 내역 및 1000만원이상의 공사에대한 수의계약 내역)	물품구매목록 계약내역목록	재무과	수시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16.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심의결과	세무과	수시	3일 이내	인터넷 게재
17. 구에서 주최한 공청회 결과	결과보고서	해당부서	수시	개최 후 7일이내	인터넷 게재
18.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단속현황	환경보전과	수시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자치법규 등 입법 예고문	기획예산실	수시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보공개 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u>실·과, 보건소, 출장소, 동</u>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생략) 1. ~ 4. (생략) <u>5. 주요사업의 자체평가 결과</u> 6. (생략) <u><신 설></u> ② (생략) 1. ~ 7. (생략) <u>8. 3,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u>	제4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실·단·과,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 및 동</u>-----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u>5.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u> 6. (현행과 같음) <u>7.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u> <u>8.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u> <u>9. 각종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내역 및 잔액</u> <u>10.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u>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u>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u>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①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을 둔다. ② 남동구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지원국장 이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 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 구 지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17>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7>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시행일 : 2011.11.18]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본조신설 2011.10.17]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1- 1600호

물품(남동마당)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12년도 구정소식지(남동마당) 제작 발간

나. 세 부 내 역 : 과업지시서 참조

품 명	규격 및 수량	납품장소	납품기한
2012년 남동마당	o 규격 : 16절 (18.9*25.4cm) o 면수 : 총 48면 - 표지 : 4면 (150g) (스노우화이트) - 내지1 : 32면 (100g) (뉴플러스) - 내지2 : 12면 (100g) (뉴플러스) o 총수량 : 120,000부 × 6회=720,000부	정보미디어과 지정장소	매회 착수일로부터 8일 이내 및 납품 후 2일 이내에 각 지면별 jpg파일을 CD에 저장 제출 (격월, 년6회 발행)

다.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12. 12. 31

라. 기 초 금 액 : 총액278,766,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입찰개시일시 : 2011. 12. 30 (금) 14:00나. 입찰마감일시 : 2012. 01. 05 (목) 14:00다. 개 찰 일 시 : 2012. 01. 05 (목) 15:00

라. 개 찰 장 소 : 남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 소지업체로서 세부항목에 정기간행물(55101519)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필한 업체

- ② 인쇄시스템(윤전기, 옵셋기계)을 구비한 인쇄업자로서 우리 구 구정소식지(남동마당) 사양에 맞는(디자인 포함) 인쇄를 할수 있는 업체이며 주사무소 및 인쇄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개찰 전 2012.01.05(목) 12:00까지 인쇄시스템(윤전기,옵셋기계) 장비 보유현황을 제출한 업체만 투찰할 수 있으며(팩스 032-453-2266로 제출가능) 계약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장비보유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 위 기한 내에 도착 접수 분에 한하며 팩스제출 여부 확인에 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미제출자는 입찰에서 제외 됩니다.
- 나.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18호(2011.05.18)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0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의 직접생산확인에 등재된 업체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5. 입찰방법

- 가. 연간예정수량을 대비한 총액입찰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서 계약이행 능력심사대상**입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22호, 2011.07.01)」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4.995%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종 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이용하여 심사를 하며, 다만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심사신청서를 받아 심사합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용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관련법규등 당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등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다. 개찰 실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행정제재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바. 본 입찰은 전자계약체결 대상이므로 낙찰자는 우리구에서 송신한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사. 기타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미디어과(032-453-2173 임덕명)로 문의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여하시고, 입찰에 관한 문의는 재무과(032-453-2266 최현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인천광역시남동구청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장수서창동 공고 제2011-21호

통 장 모 집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장을 추가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5통장

2. 후보자 접수 기간 : 2011. 12. 23~ 2012. 1. 6 (15일간)

3. 자격요건

가. 공고일 현재 당해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 만25세이상 65세미만의 남녀로서

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자치를 위해 헌신 봉사하실 분

4. 접 수 처 : 장수서창동주민센터 (09:00~18:00 방문접수)

※ 토·일, 공휴일(추석명절) 제외

5. 제출서류 (※ 서식 동사무소 비치 및 동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가. 통장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나. 통장후보자의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40%), 2차 면접심사 (60%)

7. 면접일자 및 장소 : 2012. 1. 9(월) 16:00/장수서창동주민센터 1층

8. 결과통지 : 2012. 2. 10(화) 9시 이후 개별 통지 (SMS 문자메시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 453-5507로 문의바랍니다.

2011. 12. 23

인천광역시남동구장수서창동장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사 진
	주민등록번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크기)
	주 소	남동구 동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직 업			
	최종학력	학교 (졸업, 중퇴)		
주 요 경 력 (통·반장 경력, 사회 봉사 등)	근무기관(회사명)	재임기간	근무부서 (승인기관)	직책,수행내용
		~		
		~		
		~		
		~		
		~		
지 원 동 기				
첨 부 서 류	◦통장 후보자 이력서 1부. ◦통장 후보자 자기소개서 1부. ◦기타 참고자료 (자원봉사실적 등 자기소개 관련 서류)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서창동장 귀하

【붙임 2】

[illegible]

【붙임 3】

자 기 소 개 서

(각 항목별 200자 내외 작성)

성 장 과 정	
성격의 장,단점	
학 교 생 활	
지 원 동 기	
통장 선출 이후 목표 (장래 희망포부)	
경 력 사 항	

작성자 : (인)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1-117호

2012년도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I. 2012년도 건물 등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정건물에 대한 가산율)
- ⑤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2012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34,231건)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10,799건)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7종, 135건)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4종, 144건)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7종, 2,036건)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9종, 369건)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2종, 21건)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233건)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자. 광업권(7건)

①용어정의 ②대상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 (2,809건)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하. 지하자원(198건)

①용어정리 ②지하자원의 대상 ③용어해석 ④시가표준액

2. 세부결정사항

남동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1-118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 12. 3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 구역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 명 칭 : 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 사업의 규모

연번	시설구분	면적(㎡)	위 치
1	풀무뜰소공원	3,185.9	간석동 320-7번지 일원
2	양촌어린이공원	4,413.5	간석동 436-2번지 일원
3	공공공지 1	495.4	간석동 303-12번지 일원
4	공공공지 2	509	간석동 302-2번지 일원
합 계		8,603.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인천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94-3번지 수경프라자 403호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1.12.30. ~ 2015.10.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제6항과 같음”

「별첨」

□ 용지조서(풀무꼴 소공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7598.8	3,185.9					
1	간석동	279	도로	14384.5	9.8	인천직할시남동구				
2	간석동	319-2	대	231.8	231.8	인정희 외 1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9-2			
3	간석동	319-3	대	266.1	266.1	김충일	인천 연수구 청학동 96-4 영남송도아파트 7-402	(주)삼익티디에프 안양농업협동조합	인천시 남구 도화동 744-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9, 10	근저당권
4	간석동	319-6	대	209	209	양효숙	인천 부평구 부평동 283-25	(주)서울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0-1	근저당권
5	간석동	319-7	대	280.3	280.3	김인수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9-7	김재수 서울축산업 협동조합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815-6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1-6	근저당권
6	간석동	319-8	대	206.3	206.3	이제열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9-8 201호	남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권
7	간석동	319-9	대	237	237	이종성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9-9 현광빌라 201호	대림통상(주) 간석새마을금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87-9 인천시 간석동 39-2	근저당권
8	간석동	320-3	대	102.9	102.9	황위익	인천 남동구 구월동 23 구월힐스테이트 1211동 901호			
9	간석동	320-4	대	129.6	129.6	오성철	인천 남구 관교동 13-3 동아아파트 2-604			
10	간석동	320-5	도로	79.3	79.3	인천직할시남동구				
11	간석동	320-6	대	129.6	129.6	박순덕 외 9	인천 남동구 간석동 320-6 외 1필지 희망채르빌 제1층 제101호			
12	간석동	320-7	대	128.6	128.6					
13	간석동	320-8	대	126.3	126.3	신남순	인천 남동구 간석동 320-8			
14	간석동	320-12	대	183.8	171.4	김재선	인천 남동구 간석동 320-12			
15	간석동	320-13	대	264.1	260.9	홍성남 외 4	인천 남동구 간석동 320-13 제1층 제101호			
16	간석동	320-14	대	171.2	171.2	김희연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154			
17	간석동	320-15	대	233.7	233.7	박문규	인천 남동구 간석동 320-15			
18	간석동	320-16	대	234.7	212.1	김정분 외 5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320-16			

□ 용지조서(양촌 어린이공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3,844.5	4,413.5					
1	간석동	429-2	대	172.9	10.8	김정길	인천 남구 용현동 615-7 우성아파트 101-1610호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2	간석동	429-3	대	156.8	27.7	송재훈 외 15	인천 남동구 간석동 429-3 외 1필지 제1층 제101호			
3	간석동	429-4	대	153.8	26.9					
4	간석동	429-5	대	158.0	27.4	박광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29-5			
5	간석동	429-6	대	226.9	28.4	변현숙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29-6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권
6	간석동	430-6	대	117.4	17.2	고금동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30-6			
7	간석동	431-1	도로	18,246.9	431.1	남동구				
8	간석동	436-1	대	445.3	324.6	이우영	부천시 중구 심곡동 430-16			
9	간석동	436-2	대	789.8	789.8	심리택 외 17	인천 남동구 간석동 436-2 제1층 제101호			
10	간석동	436-3	대	167.1	101.3	하상윤	송의동 177-5			
11	간석동	436-4	대	165.4	100.4	서연심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36-4			
12	간석동	436-5	대	213.1	213.1	양춘자	인천 남동구 간석동 436-5			
13	간석동	436-7	대	181.0	118.8	이현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36-7			
14	간석동	436-8	대	126.5	126.5	이순복	충북 충주시 양성면 능암리 202			
15	간석동	436-9	대	166.8	166.8	박종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36-9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근저당권
16	간석동	436-10	대	165.9	68.5	연규홍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36-10			
17	간석동	436-12	대	179.6	175.5	이상철 외 5	인천 남동구 간석동 436-12 제1층 제101호			
18	간석동	436-14	대	178.4	111.2	양종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36-14	(주)문화일보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68	전세권 설정
19	간석동	436-15	대	130.9	130.9	이인규 외 1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2-28			
20	간석동	436-16	대	158.2	136.3	이국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36-16	인주새마을금고	인천시 간석동 39-2	근저당권
21	간석동	436-17	도로	53.1	46.8	이인규 외 2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2-28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2	간석동	436-18	대	147.9	122.7	이순희 외 7	인천 남동구 간석동 436-18 제1층 제101호			
23	간석동	437-3	대	147.8	147.8	국(재무부)				
24	간석동	438-1	대	140.2	140.2	현미경 외 15	인천 남동구 간석동 원흥빌라 A동 101호			
25	간석동	438-5	대	214.7	179.2	김범익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38-5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26	간석동	438-7	대	183.7	183.7	현미경 외 15	인천 남동구 간석동 원흥빌라 A동 101호			
27	간석동	438-8	대	99.6	99.6	현미경 외 15	인천 남동구 간석동 원흥빌라 A동 101호			
28	간석동	438-9	대	251.4	225.2	윤재상 외 9	인천 남동구 간석동 원흥빌라 B동 101호			
29	간석동	438-10	도로	60.7	54.3	성구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269-2			
30	간석동	438-11	도로	61.1	54.6	유선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29 주공아파트 107-101			
31	간석동	438-6	대	183.6	26.2	재단법인 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유지재단	서울 양천구 목동 600-7			

□ 용지조서(공공공지 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495.4	495.4					
1	간석동	303-5	대	224.4	224.4	김준기	남동구 간석동 344-1 간석주공아파트71동 505호			
2	간석동	303-6	대	139.3	139.3	김선자	부평구 삼산동 389-8 미래타운아파트 405-702			
3	간석동	303-12	대	131.7	131.7	이규채	남동구 간석동 303-12	간석구월 새마을금고	인천시 간석동 153-3	

□ 용지조서(공공공지 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509.0	509.0					
1	간석동	302-2	대	331.2	331.2	박혜영 외 7	남동구 간석동 302-2 제에이동 제101호			
2	간석동	302-5	대	177.8	177.8	한승철 외 8	남동구 간석동 302-5 대림하이빌 제1층 제101호			